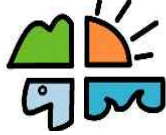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160호 2018년 9월 3일(월)

훈 령

-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

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8년 월 일

속초시장

(직인)

속초시 훈령 제 714 호

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설악동 5개”를 “관광과장, 설악동 5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설악동재개발추진단 관리담당”을 “설악동 재개발업무 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이상”을 “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